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호	3642
-----------	------

2026. 4. 23.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 변동 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85,961	185,627	334	0.2
행정운영경비	1,371	1,371	-	-
사 업 비	184,692	184,358	334	0.2
일반회계	170,761	170,427	334	0.2
행정운영경비	1,269	1,269	-	-
사 업 비	169,491	169,157	334	0.2
도시개발특별회계	7,680	7,680	-	-
사 업 비	7,680	7,680	-	-
균형발전특별회계	7,520	7,520	-	-
사업비	7,520	7,520	-	-

II.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가. 세입예산 사업별 증감 현황 : 없음

나. 세출예산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디지털정책과)	서울시재단 출연	중동발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상권 AI·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334백만원)	13,454	13,120	334	2.6

2.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가. 총괄

- 디지털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천4백만원(0.2%) 증액된 1,859억 6천1백만원임.¹⁾
 - 이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1,704억 2천7백만원) 대비 0.2%(3억 3천4백만원) 증액된 것이며(1,707억 6천1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 없음.²⁾

나. 세입예산

-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음.

1) 디지털도시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2)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지(목적 적합성),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예측불가능성),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보충성), ▶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 (출처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30, 국회예산정책처.)

다. 세출예산 및 검토의견

- 세출예산은 2026 회계연도 본예산 대비 총 3억 3천4백만원 증액하려는 것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인 ‘서울AI재단 출연’ 사업 중 ‘AI·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1건에 대한 사항임.³⁾
 - 이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 하려는 것으로, 서울AI재단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디지털 역량을 민생경제 지원과 연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⁴⁾
- ‘서울AI재단 출연’(사업별설명서 159p, 예산서 93p)은 재단법인 서울AI 재단(이하 ‘재단’)의 운영과 재단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예산(131억 1,977만 7천원) 대비 2.5% 증액(3억 3천4백만원)한 134억 5,3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음.
- 이번 증액분인 ‘AI·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것인데,⁵⁾ AI·빅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전문교육을 수료한 청년팀을 소상공인 점포와 1:1로 매칭하여 상권·고객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100개 팀과 서울지역 소상공인 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임.

3)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서울AI재단 출연」 사업설명서, 2026.

4)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전략과, 「AI·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6.

5)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전략과, 「AI·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6.

< 추경안(출연금)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률
계	13,453,777	13,119,777	334,000	△ 2.5%
출연금	13,453,777	13,119,777	334,000	△ 2.5%

- 참고로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5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 등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음.⁶⁾

○ 서울시는 2022년 및 2023년에도 본 출연동의안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⁷⁾ 금번에는 청년 100개 팀과 소상공인 100개 점포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데이터 기반 상권지원 정책의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⁸⁾

라. 종합의견

○ 금번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은 서울시가 중동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충격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기조⁹⁾를 감안할 때, 데이터 기반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S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청년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기반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2023.6.9.

8)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중동발 고유가·물가 비상 대응 총력...민생·기업 전방위 지원」, 2026.3.24

9) 서울특별시 대변인 입장문, 「서울시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4.1.;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중동발 고유가·물가 비상 대응 총력·민생·기업 전방위 지원」, 2026.3.24.

상권·고객분석과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점포 경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금번 추경이 자금지원·특별보증과 같은 직접적 재정지원이 아닌 청년 모집, 교육, 점포 매칭, 현장 컨설팅 등 간접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위기 대응의 즉시성 측면에서의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 또한 향후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 시에는 민생경제 위기 지원 수단으로서의 실질적 효과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실행될 필요가 있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김민수	02-2180-8203

[붙임1] AI·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p.6)

[붙임2] 재단법인 서울AI재단 2026년 출연 현황 (p.8)

[붙임3] 서울AI재단 출연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편성 내역 (p.9)

[붙임4] 관계법령 (p.10)

10)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 (출처 : 박총렬,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3.8.8.)

□ 추진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민간협력)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평가)

□ 추진경과

- 빅데이터 활용 대시민 서비스 협력사업을 KT 제안('22.7.28)
- 서울특별시와 (주)KT 간의 빅데이터 업무 협력 협약서('22.10.26)
- 2022년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수행('22.10~'22.12.)
 - 지원규모 : 청년 30개팀(120명), 서울지역 소상공인 30개 점포
- 2023년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수행('23)
 - 지원규모 : 청년 50개팀(200명), 서울지역 소상공인 50개 점포

'22 ~ '23년 주요 성과

- 매출증가 : 프로젝트 이후 전월비교 소상공인 **27.1% 상승('22), 38.4% 상승('23)**
- 소상공인 만족도(100점 만점) : **평균 96점('22), 91.1점('23)**
- 청년 대상 빅데이터 분석 및 SNS 마케팅 전략 교육 실시
- (청년 → 소상공인) 빅데이터기반 상권·고객분석, 점포주 심층면접, 현장방문 등 매출증대 컨설팅 방안제시 및 수행지원

□ 추진방향

-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증진 사례 발굴에 따라 '23년 50개 소상공인 점포 지원에서 **'26년 100개로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점포 경영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기반 **상권분석 및 타겟, 마케팅전략 수립 지원**
- **청년(100개팀, 400명)에게 '상권분석 서비스' 등 빅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 확대**

➔ 소비트렌트를 선도하는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과** 접목하여 소상공인 점포활성화 지원 및 빅데이터의 대시민 활용가치 확산

□ 추진체계 : 서울시 · 서울AI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

- 디지털도시국 : 청년 모집 · 홍보 지원, 평가 및 시상식 지원
 - 서울AI재단 : 프로젝트 관리 총괄, 용역발주, 모집 및 홍보, 청년 교육(AI 활용, 상권분석 지원, 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평가 및 시상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 상권분석서비스(플랫폼) 권한 오픈 및 활용 교육, 청년 컨설팅 교육 지원, 소상공인 모집 · 홍보 지원
 - 민생노동국 : 사업홍보 및 교육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
- ※ 자치구 : 소상공인 업체 추천 (자치구당 4~5개)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내용
합계	334,000
서울AI재단 출연금 (306-01)	○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용역 329,000
	- 청년활동비 : 팀별 100만원 × 100팀 = 100,000
	- 소상공인 컨설팅비 : 40,000
	- 운영요원 인건비 68,160
	- 교육비 31,000
	- 홍보 · 인쇄비 3,000
	- 우수팀 발표회 및 평가, 시상 54,000
	- 사업추진비 3,000
	- 부가세 29,840
	○ 회의수당 3,000
○ 회의운영비 2,000	

붙임2

서울시재단 2026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2026년 예산
	합 계	18,981,621
	소 계	2,078,113
AI 행정 혁신	디지털 정책연구	274,100
	AI 행정 연구개발	614,947
	AI활용 역량 강화 교육	221,600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304,240
	시민 AI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	663,226
		소 계
AI 융합	AI 플랫폼 운영	166,860
	소 계	6,324,925
AI 글로벌화	Urban AI 연구소 운영	1,632,400
	AI 기반 도시혁신 협력연구	244,775
	서울 스마트라이프워크 운영	4,200,000
	해외 전시 서울관 조성 및 운영	247,750
		소 계
AI 시민 확산	서울시청년센터(가칭) 운영	2,000,000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 운영	727,000
	서울 AI 동행버스 운영	104,000
	서울 AI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570,000
	AI 페스타 기획 및 운영	350,000
		소 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3,606,927
	기본경비	2,265,955
		소 계
예비비	인력증원 예비비	787,841

붙임3

서울AI재단 출연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편성 내역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성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투자
사업내용	○ 서울AI재단 운영 및 고유사업 추진		
사업비 (당해년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B)	증감 (A-B)
	(x-) 13,453,777천원	(x-) 13,119,777천원	(x-) 334,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추경사유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재산	출자·출 연	민간위탁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회보장 제도협의	중소기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출자·출연	2026년 04월 21일	심의예정	제335회 임시회 출연동의안
중소기업지원 사전협의	2026년 04월 10일	원안동의	

□ 2026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453,777	
계획수립	2026.01~2026.02	0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2026.02~2026.12	13,453,777	사업추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2025. 10. 1.>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2020. 6. 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
 -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신설 2025. 4. 1.>

1. 출자·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2025. 4. 1.>

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4. 1.>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025. 4. 1.>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5. 4. 1.>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5.19.>